#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2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김소희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권영진 · 신동욱 · 이헌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그 중 특정 직직원은 직급에 따른 계급 정년을 정하고 있음. 또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 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특별승진) 제10조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의 직원으로서 3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승진임용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정년: 60세"를 "정년은 60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년"을 "정년은 다음과 같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자녀를 둔 직원의 연령 정년은 다음 각 목으로 한다.

- 가. 자녀가 2명인 직원: 61세
- 나. 자녀가 3명인 직원: 62세
- 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직원: 63세

다만, 다자녀를 둔 직원의 계급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 너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더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2(특별승진) 제10조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의 직원으로
	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진
	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u>있다.</u>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제22조(정년) ①
다음과 같다.	
1. 연령 <u>정년: 60세</u> <u>&lt;단서 신</u>	1 <u>정년은 60세로 한다</u> .
<u>설&gt;</u>	다만, 다자녀를 둔 직원의 연
	<u> 령 정년은 다음 각 목으로 한</u>
	<u>다.</u>
<u>&lt;신 설&gt;</u>	<u>가. 자녀가 2명인 직원: 61세</u>
<u>&lt;신 설&gt;</u>	<u>나. 자녀가 3명인 직원: 62세</u>
<u> &lt;신 설&gt;</u>	<u>다. 자녀가 4명 이상인 직원:</u>
	<u>63세</u>
2. 특정직직원의 계급 <u>정년</u>	2 <u>정년</u>
<u>&lt;단서 신설&gt;</u>	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자녀
	를 둔 직원의 계급 정년은 자
	<u>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u>
	<u>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u>

가. ~ 라. (생 략)

② · ③ (생 략)

<u>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다</u> 음 각 목의 기간에 더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